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난구조업무 종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51호, 2017. 3.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30조 제목 변경(안 제30조)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을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으로 변경

나. 제30조 문구 삭제(안 제30조)

“치료 및” 문구 삭제

다. 제30조2 제목 변경(안 제30조의2)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을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으로 변경

라. 제30조의2 제1항의 문구 및 제6항 삭제(안 제30조의2)

제1항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문구 및 제6항 삭제

마. 제30조의3항 중 “공고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수정

바. 의무 규정 표현인 ‘하여야 한다’를 간결한 표현인 ‘해야 한다’로 정비
(안 제5의2, 제5조의3,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8,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조의3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유지·관리하여야**”를 “**유지·관리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0조 중 “**따른 치료 및**”을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을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같은**”을 “**같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3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의8제2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인도하여야**”를 각각 “**인도해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39조 전단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40조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u>실시하여야</u> 한다.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 ----- -- <u>실시해야</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 (제3항에 따라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 · 선원 등이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달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 ----- ----- ----- ----- ----- ----- ----- ----- -- <u>통보해야</u> ----.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 ----- ----- -----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제15조(연락관의 지정) ① (생
략)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
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연락관과
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
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리
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
공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허가
를 받으려는 외국구조대는 중앙
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
황일 때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
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도 수난구호활동이 끝난 후
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 5. (생 략)

② (생 략)

----- 보고해야
-----.

제15조(연락관의 지정) ① (현행
과 같음)

② -----

---- 유지·관리해야 -----.

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① -----

----- 제
출해야-----.

----- 제출해야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파견하는 선박·항공기 및 활동수역 등에 관하여 상대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 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2(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

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① --

----- 협의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보해야 -----.

제30조(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

- 따른 -----

-----.

제30조의2(수난구조업무에 종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의 실시 등)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장
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
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
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① 중
앙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2조제
2항에 따라 조난통신을 수신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간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
다.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
고해야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
출해야 ----.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시해야 -----.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① --

----- 구축해야 -----
--.

1. ~ 5. (생략)

② (생략)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조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①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는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해양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

----- 인계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① -----

----- 인도해야 -----.

② -----

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 경찰서(지구대 ·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 소방서(119안전센터 · 119구조대 · 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류물등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①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35조제3항 본문
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
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
물등의 소유자인 사실과 소유자
의 이름·주소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illegible]

--- 인도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① -----

확인해야 -----
--.

② _____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

----- 통지해야 -----
-----.

----- 정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

----- 제출해야 -----

----- 지급해야 -----.

-----.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여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u>공고하여</u> <u>야</u> 한다. 이 경우 수난구호비용 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u>통지</u> <u>하여야</u> 한다.	----- ----- <u>공고해야</u> -----. ----- ----- <u>통지</u> <u>해야</u> ----.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 장과 협의하여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 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u>고려하여야</u> 한다.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 ----- ----- ----- ----- ----- ----- ----- ----- <u>고려해야</u>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연 락 처	(032) 835 - 2246